

#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및 지하수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,
-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가구 주민들의 수질검사수수료의 부담 등의 사유로 수질검사 기피 등 안정적인 지하수원 공급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5조제1항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보조규정 삭제
  - 「지하수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항목 제외 사항 삭제
- 조례안 제5조제2항
  -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율 조정
  - ⇒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율(20%)을 100%로 상향조정

○ 조례안 제22조, 제24조 내지 제26조

-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의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

○ 조례안 제23조

-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삭제(지하수법 시행령 제 44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##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,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,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·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”를 “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 ①  <u>군수는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,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,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·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<u>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%범위에서 지원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22조(과태료처분의 통지 등) ①  <u>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</u></p>	<p>제5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 ①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u>경우</u>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 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
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·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.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"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"이란 제24조제1항에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.

제2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.

제24조(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

<삭 제>

<삭 제>

견청취 등)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.

제25조(이의제기)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

<삭 제>

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  
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강제징수) 과태료처분을  
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 
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  
니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른 독  
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 
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체납  
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  
수한다.

<삭 제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율 조정  
⇒ 지원비율(20%)을 100%로 상향조정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 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 
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.  
: 353개소 × 267,700원/개소 × (1/3) = 31,500천원  
※ 수질검사 주기 : 3년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환경위생과장 장 재 석
연 락 처	(033)330-2340

# 관계 법령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□ 지하수법

제33조(수수료) ① 생략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허가·검사·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
2.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

## □ 지하수법 시행령

제29조(수질검사 등) ① 생략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(이하 "수질검사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·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4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